#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4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천준호·윤종군·이해식

김 윤 · 정태호 · 박상혁

신영대 • 주철현 • 문금주

조 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 법률 제 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비율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제47조제2항제1호의 금융회사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생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②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			
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u>&lt;단</u>	<u>다만,</u>		
<u>서 신설&gt;</u>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비		
	<u>율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u>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